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의 견 서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5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제11조제2항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제13조제3항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독립가구 형성을 위해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 제14조제1항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비용

지원, 제15조제3항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미래청년기획단장 김 철 희